

# 웨이퍼 흡착 고정 역할 '멤브레인', 반도체 제조용 부품으로 분류 ... 무관세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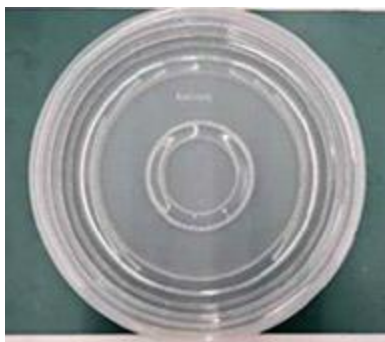
- 관세청, 2026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남녀공용 의류 등 품목분류 기준 정립

관세청은 지난 5월 14일(목) 개최된 2026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11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6월 23일(화)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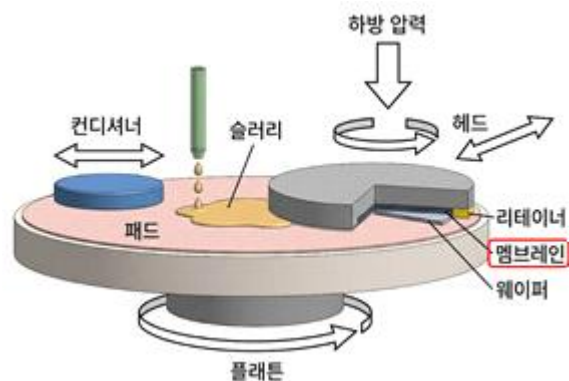
\* 수입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요소인 품목분류를 최종 결정하는 기구로, 민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1982년부터 운영 중

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반도체 제조용 CMP\* 장비에 장착되어 웨이퍼를 고정하고 균일한 압력을 전달함으로써 표면을 정밀하게 연마하는 것을 돕는 물품('Membrane')을, △플라스틱 제품(제3926.90-9000호, WTO양허6.5%)이 아닌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품(제8486.90-2090호, 기본 0%)으로 결정하였다.



< 쟁점물품 >



< CMP 공정 >

\* CMP(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반도체 회로가 복잡해지면서 표면이 울퉁불퉁하면 다음 층 공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므로 화학물질과 연마제를 활용하여 웨이퍼 표면을 평탄화하는 공정

위원회는 해당 물품이 특정 CMP 장비에 전용되어 사용되고 공정 수행에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에 주목해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부분품으로 결정하였다.

이번 결정은 첨단 반도체 산업 분야 물품의 품목분류에서 단순한 재질보다 실제 기능과 용도, 장비와의 관계가 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며, 반도체 제조에 널리 쓰이는 핵심 부품에 무관세를 적용함으로써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다음으로, 실제 트임이나 여밈 구조가 없으나 남아용 바지의 여밈 형태를 본뜬 박음질이 된 바지를, △소년용 긴바지(제6103.49-0000호, 한·중 FTA 2.6%), △소녀용 긴바지(제6104.69-0000호, 한·중FTA 13%)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심의하였다.



< 쟁점물품 >



< 앞트임 박음질 >

위원회는 해당 물품에 실제 여밈이 없고 남자아이용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디자인 요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남녀공용 의류로 판단하고 세계관세기구(WCO) 규정\*에 따라 소녀용 바지로 결정하였다.

\* 의류의 성별을 구분할 때 여밈 방향, 재단방식 및 디자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러한 기준으로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성용 의류로 분류(관세율표 제61류 주9)

이번 결정은 의류의 품목분류가 단순한 외관이 아니라 규정에 기반한 실제 구조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유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산업환경 변화와 신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물품에 대해 합리적이고 일관된 품목분류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주요 사례를 적극 공개하여 기업과 국민의 품목분류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도 운영 중”이라며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세청이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해주는 제도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신청 가능

### 붙임. 2026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내용

담당 부서	심사국 세원심사과	책임자	과 장	오현진 (042-481-7870)
		담당자	사무관	정상우 (042-481-7642)



연번	대상물품	결정
1	WASHER DISINFECTOR	8419.20-0000 (WTO양허 0%)
2	질소 발생기	8421.39-9099 (국제협력관세 5%)
3	와이드 긴바지	6104.69-0000 (한·중FTA 13%)
4	창골뚜기	0307.43-2010 (한·베트남 21.6%)
5	MEMBRANE	8486.90-2090 (기본 0%)
6	MATCHA FLAVOR	2101.20-9090 (기본 40%)
7	GREEN TEA FLAVOR	2101.20-9090 (기본 40%)
8	OCTARAY Mapping Catheter	9018.90-9000 (WTO양허 0%)
9	피크닉매트	6307.90-9000 (기본 10%)
10	BAR	8431.10-0000 (WTO양허 0%)
11	SILICONE BRA	3926.20-0000 (한·중FTA 0%)

**<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 >**

- ❖ **(기능)** 수출입자 및 일선세관의 품목분류 결정 지원을 위한 기구로서 관세법 제85조 규정에 근거하여 1982년부터 설치·운영 중. 수출입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 또는 일선 세관에서 결정하지 못하거나 불복이 청구된 건에 대해 최종 품목분류 결정을 함
- ❖ **(구성)** 관세법과 상품학 지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교수, 관세사, 시민단체 등)와 관계 중앙 행정기관 공무원(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41인으로 위원단 구성. 회의마다 16인의 위원을 지정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관세청 심사국장이 맡고 있음